

2. 住宅建設促進法 施行令中 改正令

大統領令 第13452號 1991. 8. 24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

부터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7조(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이를 6월로 한다. 다만, 건설부장관은 국민주택에 대하여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②~⑤ (생략)</p> | <p>제37조(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등) ①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국민주택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당해 주택의 입주개시일후 6월까지를 말한다.</p> <p>②~⑤ (현행과 같음)</p>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

현재에는 국민주택은 입주개시후 6개월동안 전매·전대를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의 전매·전대금지기간을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입주개시후 6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입주개시전의 전매·전대행위도 금지함으로써 국민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關 係 法 令

住 宅 建 設 促 進 法

제38조의3(국민주택의 전매행위등의 제한)

①국민주택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은 당해 주택을 최초로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매매·증여·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으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공급한 국

민주택은 타인에게 이를 전대(그 권리의 양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사업주체(제6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한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